#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840 발의연월일: 2022. 10. 18.

발 의 자: 강기윤・이채익・박성중

윤상현 · 서범수 · 윤영석

박대출 • 임병헌 • 김선교

김용판 · 구자근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,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 운 실정임.

반면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.

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(WHO) 담배규제기본협약(FCTC)을 비준하고는 있으나,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.

우리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

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.

이에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보호·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1조 등).

##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어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담배"란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.
  - 2. "제조자등"이란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.
  - 3. "담배첨가물"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.
  - 4. "담배배출물"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.
    - 가. 담배에 불을 붙여 태워 발생하는 연기
    - 나. 담배 또는 니코틴 용액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
    - 다. 가목과 나목 이외에 씹는 담배의 배출물 등 담배로부터 생성 되거나 방출되는 그 밖의 물질
  - 5. "유해성"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

고유의 성질을 말한다.

- 6. "유해성분"이란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 있는 물질로서 제11 조제2항에 따라 열거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.
- 7. "담배성분"이란 담배첨가물 성분과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 분을 말한다.
- 8. "담배 유해성 관리"란 담배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의 분석 및 공개, 제조자등의 자료제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 등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계획 등

- 제5조(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- 2.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- 3.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- 4.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기본계획은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 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- 한다. 제7조(계획 수립의 협조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
  - 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8조(조사 · 연구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

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・연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  - 2. 담배의 유해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  - 3. 제2조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
  - 4.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
  - 5. 제12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상의 영업비밀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사항

- 6. 제14조에 따른 담배성분 정보의 공개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- 1.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
- 3.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⑥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,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#### 제3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

- 제11조(담배성분의 정기검사) ①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 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배출물의 유해성분은 다음 각 호의 성분으로 한다.
  - 1. 니코틴
  - 2. 포름알데히드
  - 3.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
  - 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유해성분
  - ③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,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  -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담배성분의

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.

- ⑤ 검사의뢰 절차와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검사결과서의 제출)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검사결과서 내용 중 제9조제1항제5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  - ② 검사결과서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검사결과서의 송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해성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송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- 제14조(담배성분의 공개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검사결과서를 검토하여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, 공개 시기 및 방법, 그 밖에

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- 제15조(담배 검사기관의 지정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(이하 "검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⑤ 검사기관의 지정, 변경의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지정취소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·발급한 경우
- 3.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
- 4. 제15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 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제15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시정명령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  - 1.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-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해당 담배를 회수·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담배를 회수·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.
- ④ 회수·폐기의 절차 및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비밀유지의무)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, 공무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4장 보칙

- 제19조(수수료)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보고 및 출입·검사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

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·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 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, 일시, 장소,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·검사·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권한의 위임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22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## 제5장 벌칙

제2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자
- 2.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3.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수 · 폐기명령을 거부 · 방해 · 기피한 자
- 4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자
- 제24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5조(과태료)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담배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조자등은 이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